참고 1

사전청약 세부 절차

단계별

사업주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사전청약 사전준비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일정협의 / 관련서류 준비

- ▶모집일정 사전협의(한국부동산원) ※ 모집공고일 기준 최소 2주 전
- ▶주택 건축설계안 마련
- ▶추정분양가 작성 및 HUG 검증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안) 작성
- ▶사전청약 대상입지 및 입지별 예상 공급일정:물량 관리
- ※ 청약홈 공개 (매월 업데이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사전당첨자모집승인 / 청약접수 및 사전당첨자 발표

-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신청(시·군·구청장) ※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 건축 설계안, 추정분양가 검증서,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안 등 첨부
- ▶승인 후 10일 이상 모집공고 (일간지, 인터넷, 청약홈 등)
- ▶청약홈 공고 및 청약접수 → ▶ 사전당첨자 선정 및 발표 ※ 동호수 배정 미실시
- ▶당첨사실 통보 및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요청
 - ▶청약제한사항 및 국토부 주택소유검 색결과 사업주체 제공

자격확인 / 사전공급계약 체결

1

- ▶당첨자 제출서류, 한국부동산원 제공 정보 등을 활용하여 청약자격 검증
-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사전공급계약 체결, 당첨자 부적격자 명단 통보
- ▶사전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명단 등록 및 관리

사전당첨자 관리 (본 청약 전까지)

- ▶사전당첨자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명단 통보
-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최종 계약의사 확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 이전)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 가격 산정 1
- ▶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 15일~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격 등 본 청약 관련정보 통지,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후 그 결과(미응답자 포함)를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 ▶계약 포기자(미응답자 포함)는 사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
- ※ 계약포기 물량은 본 청약 물량으로 전환, 본 청약 물량 확정

본 청약

본 청약 입주자 모집 / 공급계약 체결

- ▶본 청약 청약홈 공고 및 청약접수 ▶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 및 모집공고 실시 → ▶본 청약 당첨자 선정 및 전체 동호수 추첨결과(사전당첨자 포함) 발표
- ▶거주기간(주민등록등·초본) 충족 및 주택 수(주택소유 검색결과) 유지여부 확인 후 ※ 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 적용
 - ▶본 청약 당첨자 주택소유 검색 요청 시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 사전청약 계약대상자도 포함하여 전산│ 검색 결과 통보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구분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일반·특별 공급비율	일반 15%, 특별 85% *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초 25%	일반 37%, 특별 63% *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초 20%			
	관련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 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절의2(사전공급계약 등) 제4절(주택 사전청약)			
사전 자격심사	청약제한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71764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 으로 청약자격 심사				
사후 자격심사	주택 수 유지	사전청약 시 주택 수 *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무주택 참여자) 당첨자 등				
	거주기간 충족	사전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 * 다만,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타(他) 청약 당첨여부	본 청약 시까지 일반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 일반청약 신청·당첨 제한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타(他) 청약제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시 제한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제한없음			
	부적격 당첨 취소자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최종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재당첨 제한 등 각종 제한 적용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 사전청약 개요

1. 민영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최신현황을 매월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 공공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LH 사전청약(https://사전청약.kr)에서 확인

2. 사전당첨자 모집 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분양가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추정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HUG, 한국부동산원,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해당지역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3.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 대비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 산정 이후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건축비 변동,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정분양가 대비 확정분양가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개별 사업단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② 청약신청 방법 및 자격판단 기준

1. 사전청약 접수방법은?

2. 사전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시점은?

⇒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 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 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로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되며, 본 청약 자격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본 청약 부적격 당첨자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청약이제한됩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세부 청약제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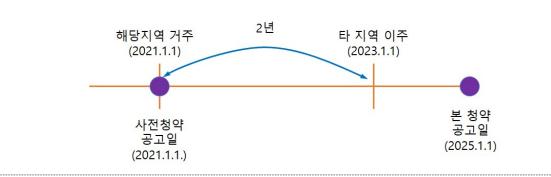
	청약 가능여부			
DI ZI	청약통장 사용 간주			O (지위포기 시 부활)
	지위 유지 시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사전청약	공공	X
			민간	X
민간		일반	청약	X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시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사전청약	공공	0
(사전당첨자)			민간	0
(시간하다시)		일반	청약	0
	부적격 당첨 취소 시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사전청약	공공	0
			민간	X(일정기간 [*])
		일반	청약	X(일정기간 [*])

공공 사전청약	청약통장 사용 간주			X
	지위 유지 시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사전청약	공공	Х
			민간	X
		일반	청약	0
시선경구 당첨자	지위 포기 시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사전청약	공공	X(일정기간 [*])
(입주예약자)			민간	0
		일반	청약	0
	부적격 당첨 취소 시 他 청약 참여 가능여부	사전청약	공공	X(일정기간*)
			민간	0
		일반	청약	0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 5.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 6.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나,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7.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지?



해당지역 거주사례	거주기간 충족여부
해당지역 거주 (2021.1.1) 타 지역 이주 (2023.1.1) 보 청약 공고일 (2022.1.1.)	인정
해당지역 거주 1년 6개월 타 지역 이주 (2021.1.1) 1년 (2024.1.1) 보 정약 공고일 (2022.1.1)	불인정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인정)

8. 사전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 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약이 제한되며, 그 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해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계속하여 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국외 거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9. 사전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당첨자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 그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고일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우선 부여하고 본청약 전까지 사후적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약 시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당첨 이후 지위 포기 및 최종의사 확인 등

1.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u>다만 사전당첨</u> 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절차는?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자는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의 청약제한사항 조회를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제한사항 조회

3. 사전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 및 그 절차는?

- - *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위 기간 내에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며,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본 청 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이후 동·호수를 지정받은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진행 일정에 따라(사업주체가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서류제출 및 자격확인, 공급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4.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 할 수 있는지?

 □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 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사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④ [사업주체]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등

1. 세움터를 통해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현재 사전당첨자 승인신청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세움터를 통한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신청은 제한되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 승인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사전청약 공급물량 배정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본 청약 및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 최 시기는?

따라서,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6일 전까지 분양 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 심사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 니다.